

케이씨아이엠(주) 위임전결규정

제 1조 【목적】

회사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정의】

본 규정에서 전결이라 함은 일상의 경영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의사결정이나 판단을 요하는 사안에 대하여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속 상급자의 결재를 생략하고 자기 자신의 책임 하에 최종적인 의사결정이나 판단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 3조 【전결권자】

본 규정에 의한 전결권자는 현 조직의 각 수직 계층별 단위 조직 책임자를 원칙으로 하며, 각 직책 위임 전결 사항은 위임전결 권한 표와 같다. 단, 전결권의 행사는 각 조직 단위의 장이나 책임자로 위촉 반거나 발령받은 자에 한한다.

제 4조 【전결의 효력】

이 규정에 의하여 전결된 업무는 대표이사가 결재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 5조 【권한과 책임】

- 각 직책은 해당 전결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동시에 그 수행에 필요한 권한을 갖는다.
- 각 직책은 본 규정에 따라 전결권이 위임전결 권한 표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차 상급 직책으로 하여금 해당 업무를 파악하여 전체 흐름에 대한 유기적 판단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한다.
- 각 직책은 차하위 직책에게 위임된 직무의 수행과 권한대행의 적부를 감독하여야 한다.

제 6조 【권한의 행사】

- 각 직책은 본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전결처리를 할 수 없으며, 자기 전결 권한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 직책에게 대행시킬 수 없다.
- 전결권자를 달리하는 둘 이상의 전결사항을 내용하는 사항은 차상급 전결권자의 전결사항으로 한다.

제 7조 【부서간 합의】

- 각 직책은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위임전결 권한 표의 위임전결 권한에 규정된 합의, 보고 등의 절차를 경유해야한다.
- 기타 전결사항 중 관련팀의 협조나 양해 또는 동의를 요하는 사항은 관련팀의 합의를 얻어야 한다.
- 합의부서의 전결권자는 합의를 요청한 부서의 전결권자와 동등한 직책이어야 한다.
- 전 항에 의한 합의를 행함에 있어 의견이 상이할 때는 그 상위 직책간의 합의에 따른다.

제 8조 【전결 사항의 특례】

- 전결권자는 이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전결사항 이더라도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이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차상급자에 보고한다.
- 이 규정에 의한 위임에도 불구하고 전결권자의 직속 상급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하여 결재 받을 것을 전결권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 이 규정 중 전결권자의 구분을 위한 금액 표시는 건별 해당 금액을 말하며, 전결권의 조정을 목적으로 동일 건을 분리 처리할 수 없다.

제 9조 【권한대행】

- 각 직책의 유고 또는 공석시 그 직책의 직무권한은 원칙적으로 차상급자가 수행하여야 한다.
- 전 항에 따라 집행된 사안은 사후에 해당 전결권자에게 신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 대표이사 직속일 경우 해당 팀장이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제 10조 【후결】

천재지변 기타의 긴급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전결권자의 결재를 득할 수 없고 또 이를 대행할 다른 적격한 직책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량으로 필요한 응급조치를 하고 지체 없이 본 규정에 의한 전결권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단, 후결사항이 부결되었을 경우에는 부결된 시점부터 무효로 한다.)

제 11조 【전결권의 표시】

전결권의 표시는 전결권자 자기의 해당란에 "전결"의 표시를 하고 최고 결재권자의 결재란에 서명 또는 날인한다.

제 12조 【전결권 적부 확인】

경영기획, 경영지원 담당은 지출행위와 관련된 전결권이 본 규정에 따라 적용되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전결권 위반이 발견될 때에는 이에 관련된 지출행위를 금지 시킨다.

제 13조 【기타】

1. 기본품의를 득한 사항의 세부업무 수행(회계전표처리 포함)은 별표의 위임전결 권한 표를 제외하고는 해당 기본 품의 전결권자의 차하위 직책이 행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세부업무 수행의 내용이 기본 품의 내용과 상이 할 경우에는 세부업무수행을 기본품의 전결권자가 행한다.)
2.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사안은 총액으로 표시하여 품의를 득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회계전표 처리는 차하위 직책의 전결사항으로 한다.
3. 본 규정의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시 이에 대한 유권해석을 하며, 본 규정 적용의 적부를 최종적으로 확인한다.

제 14조 【준용】

이 규정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타 규정에 정한바에 의하고 타규정에도 정함이 없는 사항은 일반적인 관례에 따른다.

부 칙

1. 이 제정은 2014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2. 이 제정은 2015년 6월 22일부터 2차 개정하여 시행한다.
3. 이 제정은 2018년 5월 8일부터 3차 개정하여 시행한다.
4. 이 제정은 2019년 2월 28일부터 4차 개정하여 시행한다.
5. 이 제정은 2020년 4월 1일부터 5차 개정하여 시행한다.
6. 이 제정은 2021년 2월 1일부터 6차 개정하여 시행한다.
7. 이 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7차 개정하여 시행한다.
8. 이 제정은 2023년 3월 15일부터 8차 개정하여 시행한다.
9. 이 제정은 2026년 1월 5일부터 9차 개정하여 시행한다.

케이씨아이엠㈜